

# 「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학대피해아동쉼터(여아,아이좋은집) 민간위탁 기간만료('25. 12. 31.)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하며,
- 학대피해아동에게 신속한 보호조치와 치료,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심신 회복과 원가정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구미시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구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사 무 명 :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
  - 2개소 : 문수의집(남아/신규위탁), 아이좋은집(여아/재위탁)
- 추진근거
  - 「아동복지법」 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)
 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  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  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제6조

- 위탁사무 :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·운영 전반
  -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, 생활지원, 상담 및 치료, 교육·정서 지원
  - 종사자 인사, 회계, 시설 및 물품 관리 등
  - 그 밖에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30. 12. 31.(5년)
- 위탁시설 현황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			인가일	위탁사유
		종사자	정원	면적(m <sup>2</sup> )		
문수의집 (신규위탁)	구미시 관내 (비공개)	6	7	98.5m <sup>2</sup> (2층 주택)	03.03.19 (재개 16.05.19)	운영 재개 후 위·수탁 미체결
아이좋은집 (재위탁)				111.66m <sup>2</sup> (1층 주택)	21.07.08 (개소 21.09.01)	위·수탁 기간 만료 도래 (25.12.31)

- 위탁조건
  - 수탁업무 외 위탁 및 법인, 단체사무 처리 불가
  - 보조금 및 수익재산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
  - 「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구미시와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최종선정
- 소요예산 : 728백만원(국 30% 도 21% 시 49%) ※ 2026년 기준
  - 시설당 364백만원(인건비 82%, 운영비 4%, 사업비 14%)
- 적정성검토결과 : 적정 ※ 2025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
-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- 부서의견
  -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정
  - 피해아동의 다양한 복지 욕구 대응 시 축적된 민간 전문지식 활용 용이하고, 행정비용·재정 절감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제고 가능
  - 공개모집을 통해 여러 기관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,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 기여

# 학대피해아동쉼터(아이좋은집) 성과평가

## 1. 평가개요

- 추진근거 :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, 제23조
- 기 간 : 2025. 7. 3.(목) ~ 7. 4.(금)
- 대 상 : 학대피해아동쉼터(아이좋은집)
- 위탁 기관 : 다사랑 사회적협동조합
- 평 가 자 : 2명(아동보호팀장, 업무담당자)
- 평가방법 : 평가표[붙임]에 의한 현장평가
- 평가항목 : 7개 항목 20개 지표(사업계획, 인력관리 등)

### ◇ 공통분야(40점)

- ① 사업계획 :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집행 준수
- ② 인력관리 : 조직·인력관리적정성, 근태관리
- ③ 예산관리 : 예산 및 지출 관리 체계 및 집행의 적정성
- ④ 성과관리 : 사업목표 달성 수준,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

### ◇ 개별분야(60점)

- ① 조직운영 : 시설 환경, 시설장 리더십, 직원 역량강화 및 복지 등
- ② 아동의권리 : 비밀보장,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, 고충처리
- ③ 프로그램 및 서비스 : 개별서비스 제공의 전문성,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

## 2. 평가결과 및 총평

- 결 과 : 82점(우수) \* 60점 이상 시 재위탁/재계약 가능

총점 (100)	공통분야(40점)				개별분야(60점)		
	사업 계획 (10)	인력 관리 (10)	예산 관리 (10)	성과 관리 (10)	조직 운영 (30)	아동의 권리 (15)	프로그램 및 서비스 (15)
82	8	7	7	8	25	14	13

### ○ 총 평

- 아동학대로 피해 입은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,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,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.
- 또한, 시설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아동 복지 증진과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## 4. 검토의견

### ○ 본 동의안은

- 학대피해아동에게 신속한 보호조치와 치료·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 아동에게 숙식, 생활 지원, 상담·치료, 교육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필수적 보호시설로서,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기관을 통한 민간위탁은 서비스 질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된 본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, 상당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온 바,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.
- 또한, 집행기관에서는 이용 아동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법률 상담사 등 외부 전문가 및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, 병원 등과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, 쉼터가 단순한 보호 공간을 넘어 아동 학대 예방과 자립 지원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